

[사 건 명] 행심 2016-28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당사자 관계와 신청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은 문제가 없으며, 청구기간과 방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6. 6월 경 부터 교실에서 5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 ●●●, ◇◇◇이 ○○○○을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괴롭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

나. 청구인 ▽▽▽는 엘리베이터 벽에 “○○○ 죽어” 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욕설과 협박 쪽지를 ○○○의 책상에 놓고 갔다.

다. 2016. 8. 4.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은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 ◇◇◇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2016. 8. 19.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사건 관계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은 단체 카톡에 피해학생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 참여 여부, 가해시점 및 주동자에 대한 사실 파악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 2) 2016. 6월까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옆 짝으로 다툼 없이 지냈으나, 7. 1.부터 짝이 바뀌어 수업시간에 앞에 앉게 된 ○○○의 장난이 심해져 청구인이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 3) 청구인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 청구인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임시담임교사에게 자리변경을 4회 이상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 4)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청구인에게 처벌이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이 아닌 청구인과 ○○○의 개인적인 사건이므로 이 처분은 과하고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5) 엘리베이터 옆 붉은색 글씨는 당시 짝이 준 분홍색 볼펜으로 한 낙서였으며 붉은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이다. 또한 낙서와 쪽지는 7. 22에 한 것이므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을 괴롭혔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은 2016. 7. 1.부터 괴롭혔다고 주장하나 다른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5~6월경부터 놀리는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7. 22. 청구인이 ○○○의 책상에 놓고 간 쪽지로 인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 2) ○○○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쪽지를 준 것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임시담임교사는 사소한 다툼으로 보아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
- 3) 청구인에 대한 처분 결정시 피해자의 정서지능검사결과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4)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의 친한 학생들끼리 ○○○을 헐담하였고, 서로가 ○○○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였다.
- 5) 청구인이 다른 남학생 2명에게 ○○○이 야동을 본다고 말한 것으로 반 전체에 그런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업시간에 조용히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묵살해서 ○○○에게 했다는 청구인의 행동들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사실관계와 행위에 대한 판단

위 사건의 경위와 관계자 주장 등 쟁점에 대하여 토의하고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과 ●●●, ◇◇◇는 매우 친하게 어울려 다니며 ○○○에 대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모욕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 행위로 보이는 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옆에 붉은 글씨로 “○○○ 죽어”라고 써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를 보게 만들거나, “○○○ 야한 동영상을 보았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 가능성이 있도록 2명 이상의 학생에게 말하는 등(일부 학생의 진술서에도 나오고 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 있었음)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나. 개인적 갈등인지 집단적 괴롭힘인지 여부

청구인은 ○○○와의 개인적 갈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3명이 항상 어울려 다니고 상호의 행동을 서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가 자극을 받는 등 집단적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며, 청구인은 ○○○와 직접적 갈등의 당사자로서 위 3명의 여러 집단적 괴롭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상당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4개월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 가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 및 합의보다는,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피

해학생도 청구인을 괴롭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위 3명이 항상 어울려 다니고 상호의 행동을 서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 자극을 받는 등 공동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측이 ○○○○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뜬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고 상당 기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감안할 때, 청구인 등과 ○○○○의 물리적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원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